

안양시 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

제정 2009. 9. 29 훈령 제538호
전부개정 2017. 3. 17 훈령 제667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의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안양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안양시 시정홍보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안양시 시정홍보위원(이하 “홍보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정시책 홍보
2. 시민여론 수렴 및 시책 반영 건의
3. 그 밖에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

제3조(구성) 홍보위원은 동별 2명씩 62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촉) 홍보위원은 시정에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안양시민 또는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임기) 홍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촉한 날부터 기산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위촉 해제) 시장은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7조(실비변상) 홍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안양시 시정홍보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

부칙 <2017. 3. 17 훈령 제667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홍보위원은 이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